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안전관리

GUIDE BOOK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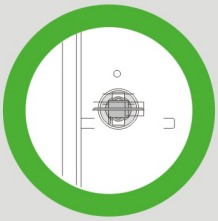

폐쇄/잠금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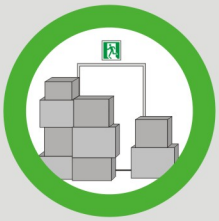

물건 적치 금지

방화문 닫기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안전관리 Guide Book

## Contents


### 01 알기쉬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현황 및 추이 / 4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 6
제3장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 8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 13
제5장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 15
제6장 소방안전교육 / 18
제7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방염성적서 교부 절차 / 20
제8장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22
제9장 화재배상책임보험 / 23
제10장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 24

### 02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장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 28
제2장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38
제3장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 41

### 03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제1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 46
제2장 만화로 보는 화재 예방 / 50
제3장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52

### 0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제1장 응급처치의 개요 / 56
제2장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사용 / 57

### 첨부 화재사례로 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 / 61

자주하는 질의응답 / 65

PART 01

# 알기쉬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현황 및 추이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제3장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제5장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제6장 소방안전교육
제7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방염성적서 교부 절차
제8장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9장 화재배상책임보험
제10장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현황 및 추이

## ■ 화재위험 분석

•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전체화재 215,093건 중 3,135건으로 1.46%를 차지한 반면, 인명피해 점유율은 1.86%로 다소 높음

[단위 : 건, 명]

| 구 분 | 전 체 | | 일반건축물(다중제외) | | 다중이용업소 | |
|---|---|---|---|---|---|---|
|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 5년 합계 | 215,093 | 10,679 | 211,958 | 10,480 | 3,135 | 199 |
| | 100% | 100% | 98.54% | 98.14% | 1.46% | 1.86% |
| '17년 | 44,178 | 2,197 | 43,571 | 2,174 | 607 | 23 |
| '16년 | 43,413 | 2,024 | 42,621 | 1,957 | 792 | 67 |
| '15년 | 44,435 | 2,093 | 43,884 | 2,058 | 551 | 35 |
| '14년 | 42,135 | 2,181 | 41,549 | 2,154 | 586 | 27 |
| '13년 | 40,932 | 2,184 | 40,333 | 2,137 | 599 | 47 |

##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인명·재산 피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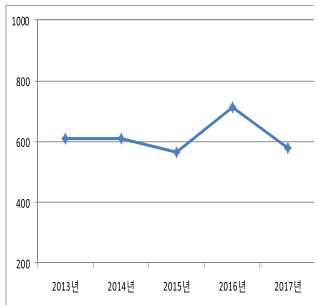


[연도별 화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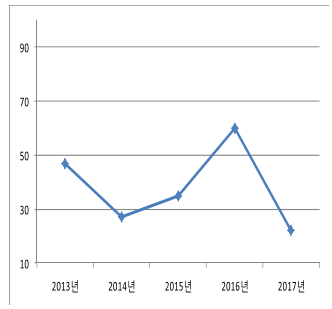


[연도별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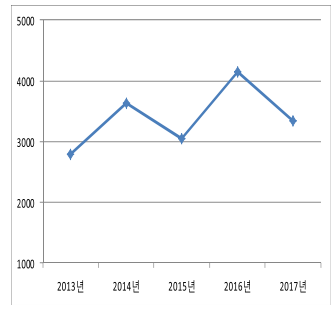


[연도별 재산피해]

• (화재발생/인명피해)

**연평균 화재건수 627건/인명피해 40명(사망 3, 부상 37)**

• (업종별 화재발생) ① 일반음식점 ② 노래연습장 ③ 유흥주점 ④ 고시원 순

• (업종별 인명피해) ① 일반음식점 ② 고시원 ③ 노래연습장 ④ 유흥주점 순

• (화재발생 요인) ① 전기적요인 ② 부주의 ③ 기계적결함 순

## ■ 최근 5년간('13~'17)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천원]

| 구 분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 | 재산피해 |
|---|---|---|---|---|---|
| | | 계 | 사 망 | 부 상 | |
| 일반음식점 | 1,027 | 64 | 2 | 62 | 7,203,525 |
| 휴게음식점 | 68 | 2 | 0 | 2 | 236,059 |
| 단란주점 | 195 | 20 | 3 | 17 | 1,115,992 |
| 유흥주점 | 447 | 26 | 5 | 21 | 2,107,493 |
| 게임제공업 | 129 | 2 | 1 | 1 | 265,454 |
| 노래연습장업 | 595 | 31 | 1 | 30 | 2,474,170 |
| 복합유통제공업 | 2 | 0 | 0 | 0 | 1,034 |
| 찜질방 | 88 | 5 | 0 | 5 | 731,950 |
| 산후조리원 | 8 | 1 | 0 | 1 | 12,136 |
| 학원 | 15 | 0 | 0 | 0 | 25,897 |
| 고시원 | 264 | 32 | 4 | 28 | 380,557 |
| 전화방 | 2 | 3 | 0 | 3 | 25,489 |
| 콜라텍 | 7 | 0 | 0 | 0 | 84,931 |
| 기 타 | 288 | 13 | 0 | 13 | 2,249,172 |
| 합계 | 3,135 | 199 | 16 | 183 | 16,913,859 |

• 화재는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고시원,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칸막이를 이용한 다수의 구획된 실과 좁은 통로라는 공통적인 특징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 다중이용업소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 합 계 | 실 화 | | | | | | | 자연적 요인 | 방 화 | | 미 상 |
|---|---|---|---|---|---|---|---|---|---|---|---|
| | 전기적 | 기계적 | 화학적 요인 | 가스 누출 | 교통 사고 | 부주의 | 기타 | | 방화 | 방화 의심 | |
| 3,135 | 1,340 | 246 | 15 | 12 | 0 | 1,158 | 29 | 1 | 38 | 39 | 257 |

• 원인별로는 **전기화재가 1,3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 1.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

## 2. 다중이용업의 종류

| 업 종 | | | 요 건 |
|---|---|---|---|
| 단란주점영업 | | | 층별, 면적 구분 없음 |
| 유흥주점영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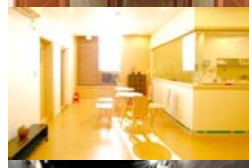 | |
| 복합 영상물 제공업 | 영화상영관<br>비디오물 감상실업<br>비디오물 소극장업 | | |
| 안마시술소 | | | |
| 노래연습장업 | | | |
| 산후조리업 | | | |
| 고시원업 | | | |
| 전화방업 | | | |
| 화상대화방업 | | | |
| 수면방업 | | | |
| 콜라텍업 | | | |
| 실내권총사격장 | | | |
| 골프연습장업 | | | 층별, 면적 구분 없음<br>※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영업에 한정 |

| 업 종 | | 요 건 |
|---|---|---|
| 휴게음식점영업<br>제과점영업<br>일반음식점영업 | | ① 지하층 : 66m² 이상<br>② 지상층 : 100m² 이상<br>※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
| 게임제공업<br>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br>복합유통 게임제공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음<br>※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게임제공업, PC방에 한함) |
| 학 원 | <br> | ① 수용인원 300인 이상 (영업장 570m² 이상)<br>② 수용인원 100~300인 미만인 아래 학원(영업장 190m²~570m² 미만)<br>•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br>•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 면적의 합이 570m² 이상인 곳<br>•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 목욕장업 | | ① 일반목욕장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m² 이상)으로 땀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는 곳<br>② 찜질방 : 모두 해당 |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② 소화기 등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③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④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
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미가입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장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과태료!

## 1. 소방시설

### 1) 소화설비

| | | |
|---|---|---|
| 소화기 |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br>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br>※ 식용유를 다량 사용하는 주방에 K급소화기 설치 |
| 자동확산 소화기 | | |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캐비닛형 포함) | | ① 대 상 : 고시원·산후조리원·지하층·밀폐구조영업장·실내권총사격장<br>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 103) |

### 2) 경보설비

| | | |
|---|---|---|
| 비상벨설비 |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선택)<br>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마다 1개씩 |
| 자동화재 탐지설비 |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비상벨 설비와 선택)<br>② 수신기 : 영상음향장치가 설치된 영업장<br>③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br>※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설치 |
| 가스누설경보기 | | ① 대 상 :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br>② 설치기준<br>• LPG : 감지부를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br>• LNG : 감지부를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 |

### 3) 피난설비

| | | |
|---|---|---|
| 피난기구 | | ① 대 상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발코니·부속실)<br>② 설치기준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br>※ 산후조리원에 완강기는 설치불가 |
| 피난유도선 | | ① 대 상 : 영업장 내부통로 및 복도가 있는 영업장 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업<br>② 설치기준 : 영업장 내부통로 및 복도, 전기(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한쪽벽면) |
| 유도등<br>유도표지<br>비상조명등 | <br>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br>② 설치기준 : 출입구,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br>※ 유도표지 : 외광 등 상시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실에 설치가능 |
| 휴대용<br>비상조명등 |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br>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

## 2. 비상구

| | |
|---|---|
| <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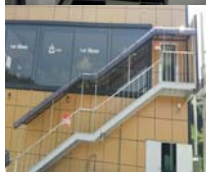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br>② 설치기준 : 영업장마다 설치(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br>• 위치<br>-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br>-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br>•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br>• 문의 열림방향 : 피난방향<br>• 문의 재질 :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br>• 추락방지 안전조치 : 120cm이상 난간 또는 안전로프 2줄, 추락위험 경고표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

※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쉽게 설치하기

www.nfa.go.kr

## 1 추락위험 표지 부착 ▸▸ 눈높이에 맞게 부착합니다.

표지는 인근 소방서에서 제공해주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2 경보장치 설치 ▸▸ 문상단에 설치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어경보기" 조회 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3 안전로프 설치 ▸▸ 성인 가슴높이(1.2m) 2줄 이상 설치합니다.

전동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재료는 철물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추락방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문의 및 안전장치가 없는 비상구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연락 주세요.

소방청

### 비상구 설치 세부기준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①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높이 100cm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② 추락 등의 방지 안전시설 : 발코니· 부속실 문개방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비상구 모든 문마다 부착,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난간 또는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

■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 적용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로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②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③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비상구 및 주출입구를 불연재료 문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면서 화재의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②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33$m^2$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① 대　　상 : 구획된 실로 인해 통로가 형성된 영업장

② 설치기준

- 통로폭 : 120cm 이상(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실의 출입문 설치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일 경우 150cm 이상)
- 구획된 실에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것

## 4. 그 밖의 안전시설

| | | |
|---|---|---|
| 영상음향<br>차단장치 | <br> | ① 대　　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단란·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br>② 설치기준 : 화재시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되도록 설치(수동으로도 조작가능)<br>※ 수동차단장치 별도 설치<br>• 관계인이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br>•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 부착<br>• 영상음향차단기 작동으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
| 누전차단기 |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br>② 설치기준 :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
| 창문 | | ① 대　　상 : 고시원업<br>② 설치기준<br>• 각 층별 1개 이상 설치(50cm×50cm 이상)<br>→ 외부로 열리는 구조<br>•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의 복도 등에 설치 |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출입문 → 방화문,　개구부 → 자동방화 댐퍼 설치

## 5. 영업장의 내부구획

| | |
|---|---|
| |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br>② 설치기준 :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는 불연재료로 구획<br>•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br>• 내부구획시 관통(틈)부분은 내화충전 재료로 마감 |

#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 1. 실내장식물

[원칙]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예외] 합판·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내화구조의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10분의 5) 방염물품 설치 가능

## 2.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방염대상물품

- 차광용 커튼류(블라인드)
- 바닥 카펫
-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됨 /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

[커튼]

[블라인드]

[카펫]

[합판]

[스크린 골프장]

[암막]

[무대막]

[소파]

[방염대상물품]

## 3.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 1) 제조공정 처리물품(선처리 물품) : 물품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실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

### 2) 현장처리 물품(후처리 물품)

현장에 있는 목재에 방염필름지 또는 방염도료(페인트)로 처리

↓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중 일부를 잘라내어 시험 시료로 제출(가로 29㎝×세로 19㎝)

↓

관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 실시

※ 2013. 7. 10.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성능검사 한 방염필름을 부착한 현장처리 방염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검사 미실시(방염성적서로 갈음)

[방염물품에 부착되는 방염표지의 모양]

| | | | |
|---|---|---|---|
| 제조공정 방염 처리물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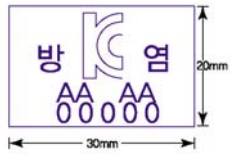 | | |
| | 카펫, 합판,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합성수지벽지류, 타공 등 | 커튼 등 섬유류 (내세탁성) | 커튼 등 섬유류 (비 내세탁성) |
| 현장방염 처리물품 | | | |

| | | |
|---|---|---|
| 방염처리자 | ○○방염 | ○○소방서 (인) |
| 처리방법 | 방염도료 | |
| 면 적 | ○○○㎡ | |
| 방역성능 검사 | 제2013-○○호 (2013년○월○일) | |

[방염필름] [방염 후처리 성능검사 합격표시]

# 제5장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 1. 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피난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 피난계단 · 피난통로 ·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비치

1) 비치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설치 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2)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3)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
(컴퓨터 작동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1) 크기 : B4(257mm × 364mm) 이상
A3(297mm × 420mm)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2)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피난안내도 예시

-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편집도안 활용·작성(소방청 홈페이지-공지사항-소방소식)

#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Standard
Evacuation Diagram
Guide Line

소방청

## 2. 피난안내 영상물

### 1) 상영대상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2)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4)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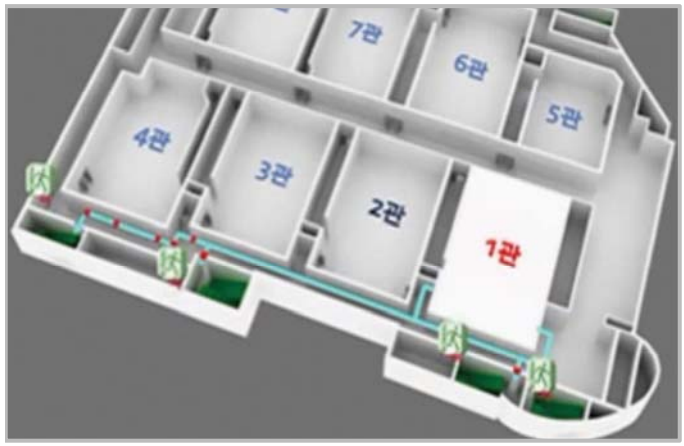


**화재 발생시**
- 발신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대피시**
- 자세를 낮춘다.
- 물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피난구를 통해 유도등을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예시]

###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 및 대처방법

### 4) 피난안내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나친 홍보영상으로 피난안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 제6장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예외

①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이내 받아야 한다.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 | |
|---|---|
| 신규교육 |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br>•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
| 교육방법 | 소집교육(관할소방서),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

※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 | |
|---|---|---|
| 소방서 집합교육 이수 | → | 이수 증명서 교부 (관할소방서) |
| 사이버 교육 이수 | | 이수 증명서 교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 이수 증명서 훼손시 재교부 신청 가능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 무엇이 달라졌나요?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횟수 | 영업전 1회 | 영업전 1회 + 2년에 1회 |
| 과 태 료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200만원 이하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 | |

### 교육시기

2016.01.20 이전 교육이수자 : 2018.01.20
2016.01.21 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교육장소

전국 소방관서, 사이버교육 (cyber.kfsa.or.kr)

### 문의

시·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www.nfa.go.kr

# 제7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방염성적서 교부 절차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STEP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접수 및 설계도서 검토

**설치신고 접수**

-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 – 3일이내**
  - 신 청 자 : 다중이용업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1부
    - ·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 ·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부
- **설계도서 검토**
  - 적합(공사 개시 통보), 부적합(보완토록 지도)

**STEP 3**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완공신고 접수**

-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 – 3일이내**
  - 신 청 자 : 다중이용업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1부
-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여부 확인
  - 방염대상물품 등 변경여부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영업주의 소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STEP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 적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발급대장에 기록)
- 부적합 : 보완 요구

## 2.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절차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 방염처리대상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설명

**STEP 2** 방염성능시험 신청서 접수

**검사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신 청 자 : 방염처리업자 및 시공자
  - 수 수 료 : 20,000원(수입증지료)
  - 구비서류
    -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부
    - · 시공내역서 1부(설계도서 포함)
    - · 시료수량 : 종류별, 방법별 각 1개 이상
    - · 시료규격 : 가로29cm × 세로19cm 이상
  - 방염처리업 등록증 확인(시공자 경우 제외)

**STEP 3** 방염성능시험 및 판정

**방염 성능 시험**

1. 항온건조기로 **24시간 동안 건조**
2. 데시게이터로 2시간 동안 습기제거
3. 45도 연소기 시험(잔염, 잔신, 탄화면적 · 길이)

**STEP 4** 방염성적서 발급

**성적서 교부**

- 합 격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 표시" 교부
- 불합격 : "방염성능검사(불합격)성적서" 만 교부
  - 방염처리업자 행정처분
  - 방염성능물품 제거 또는 재시공

# 제8장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1.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1) 개 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보완명령 등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2)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1) 공개사항

① 미 이행 업소의 명칭, 주소

②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③ 미 이행의 횟수

(2) 공개기간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3) 공개방법 등 : 관보·공보, 신문, 소방서 홈페이지 등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

##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기(공통)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공표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교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여 갱신 여부 결정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예시]

###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공표 함

# 제9장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1)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2)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2. 보험금(보험 한도액)

| 사망 · 후유장애 | 부 상 | 재산피해 |
|---|---|---|
| 1인당 1억 | 2천만원 | 1억 |

## 3. 가입의무 제외 대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 4. 지급사례

- 충북 보은 ○○클럽 화재 (사망 4, 부상 5)
- 보험가입금액 : 26,000원 (○○손해보험)
- 보험금 :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병원치료비+$\alpha$

## 5. 보험요율 차등적용

-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 (할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할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0장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 1. 과태료(300만원 이하)

1)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대상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3)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5) 내부구획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6)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7)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사람

(8)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9)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10)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1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이행강제금 부과

1) 사유 및 대상

조치명령(안전시설등 시정보완명령 등)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초 조치명령일로부터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징수)

2)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1천만원 이하

##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단위 : 만원)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1. 소방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br>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50 | | |
|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br>①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br>②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br>③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br>④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br>⑤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100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 | | |
|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50 | 100 | 300 |
|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 50 | 100 | 300 |
| 3. 안전시설등 설치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br>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 50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 | 50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4.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5. 내부구획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6.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50 | 100 | 300 |
| 7.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8.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50 | | |
| 9.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0~300 | | |
| 10. 보험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 11.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300 | | |
| 12. 보험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300 | | |
| 13.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PART 02

#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장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제2장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제3장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kfsi.or.kr에서
각 시설별 점검 동영상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제1장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 1. 소화기

###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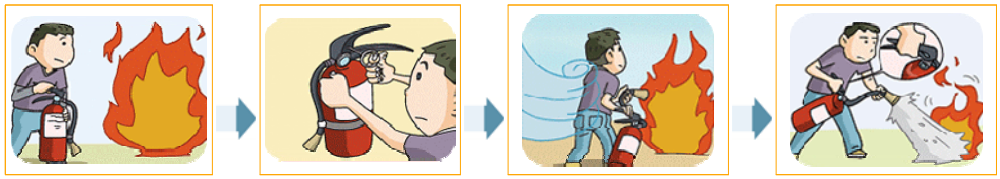

소화기를 불이 난곳으로 옮긴다 →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방사한다

※ **소화기 내용연수 : 제조년월부터 10년**(성능확인검사시 3년 연장가능)

### 주요 점검사항

①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②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③ 압력계 지침이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가압식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폐기 후 축압식소화기로 교체사용

(1)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2)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3) 압력계 지침이 녹색(0.7~0.98Mpa)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으로 정비가 필요

(4)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

## 2. 옥내소화전

**사용 방법**

옥내소화전함을 열고 호스와 관창을 꺼낸다.

◀ 연결된 관창과 호스를 화점부근으로 이동한다.
(호스가 꼬이지 않아야 하며 방수시 수압이 세므로 관창을 꽉 잡을 것)

옥내소화전 밸브를 연다. ▶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림)
※ ON-OFF방식의 경우 스위치를 별도로 작동시킨다.

화점에 방수하여 소화한다.

## 3. 간이스프링클러

**주요 점검사항**

(1) 헤드가 누락된 장소는 없는지, 헤드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2) 상수도 급수배관 및 간이스프링클러의 개폐밸브는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

(3) 시험밸브함에서 시험밸브를 열었을 때 방수압력이 0.1MPa 이상인지 확인

(4) 상용전원이 상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10분이상 지속되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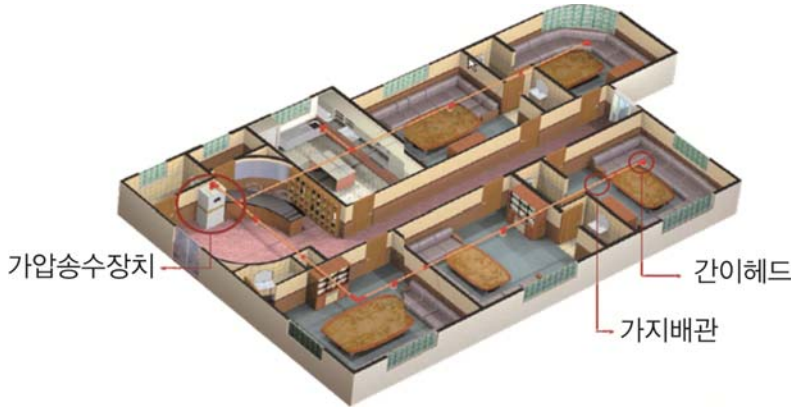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시]

## 4. 자동화재 탐지설비

- 화재시 발생되는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자동감지
- 화재시 수동으로 발신기 스위치 누름

⇨ 경보를 발함으로써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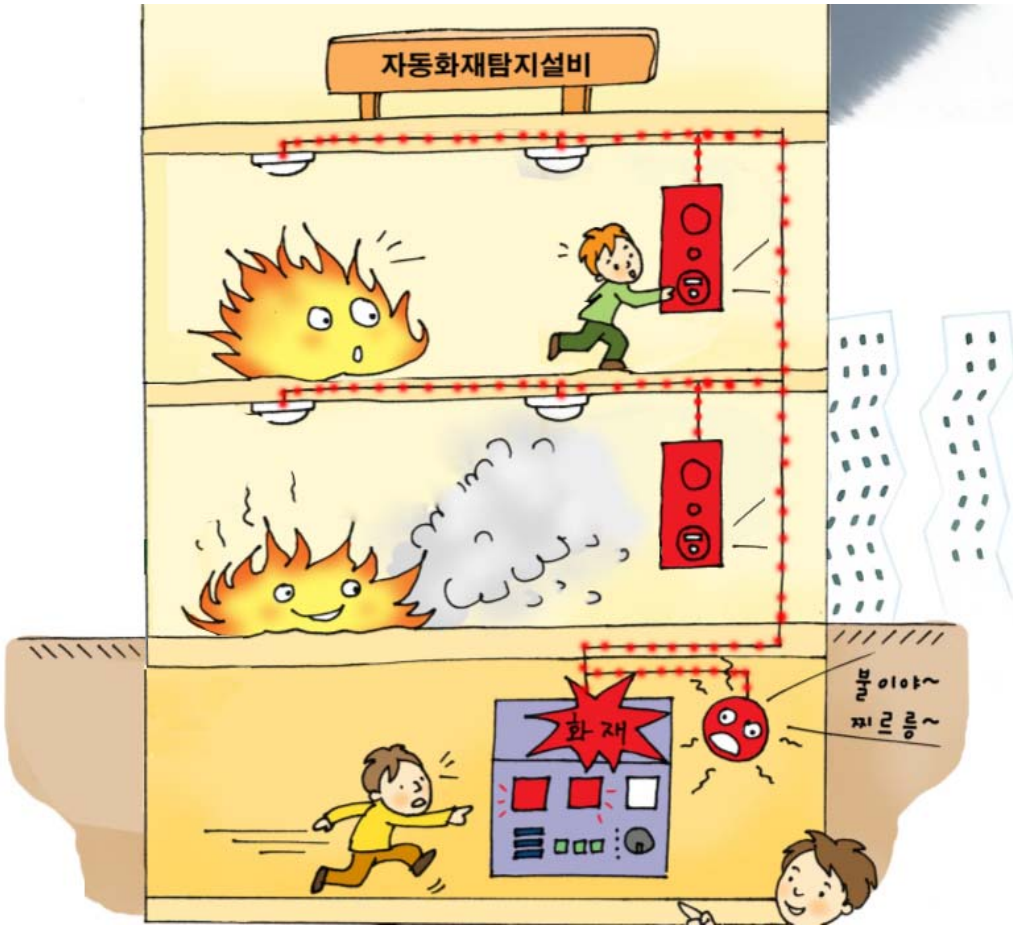

1) 감지기 : 화재시 열·연기·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

[열감지기(차동식)]

[열감지기(정온식)]

[연기감지기]

**주요 점검사항**

(1) 탈락되거나 훼손된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

(2)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가 설치 되었는지와 설치가 누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

2) 발신기(비상벨) : 화재시 수동으로 누름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

**주요 점검사항**

(1) 평상시 : 위치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음

(2) 점검시 : 누름버튼을 눌렀을 경우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경보되는지 확인

[발신기]

[화재시 발신기 누름버튼을 힘껏 누른다.]

3) 수신기

(1)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

(2) 화재발생을 표시하고 각 층의 음향장치로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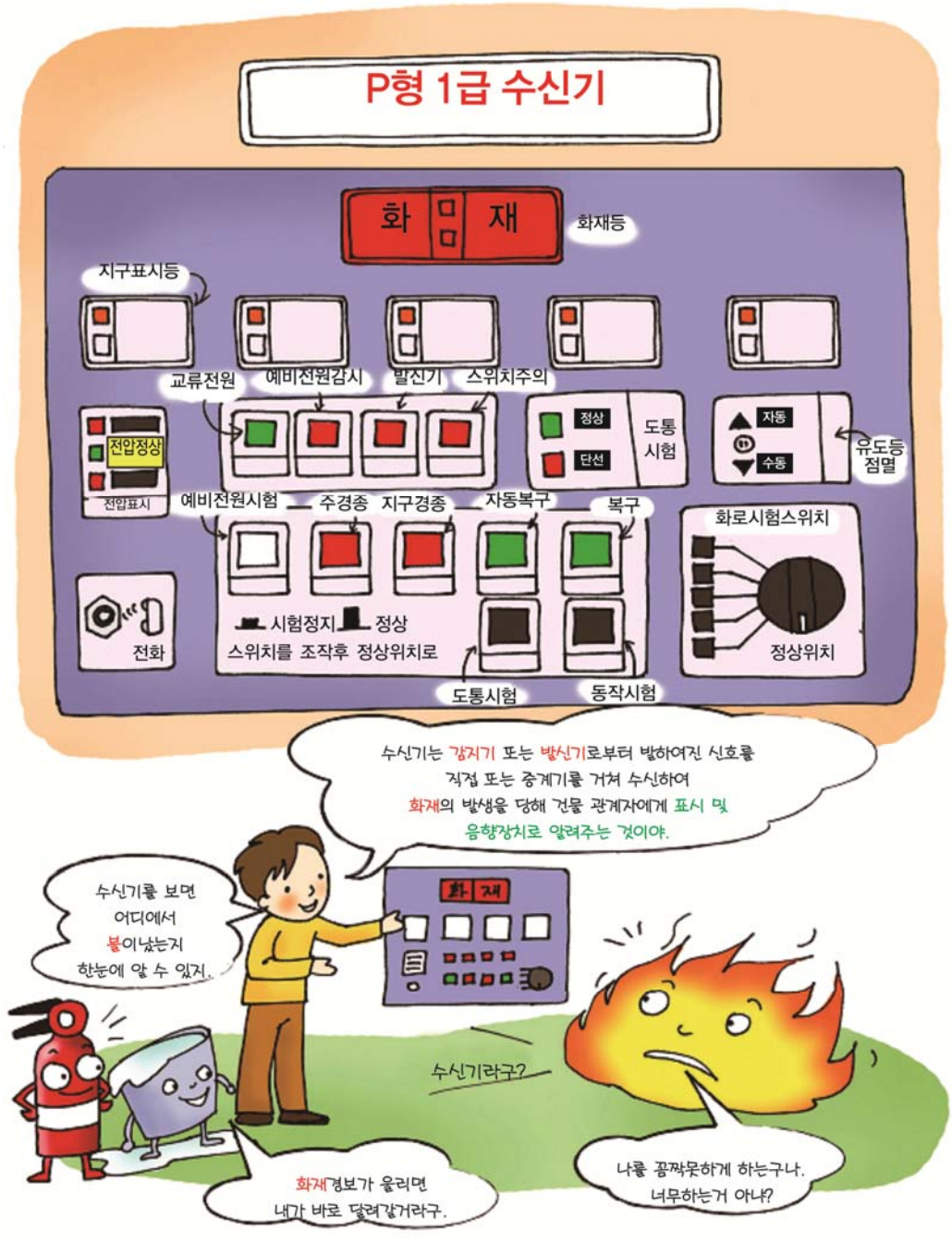


**Tip**

※ 평상시는 전압정상 및 교류전원등만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경종정지 및 시험스위치 등을 눌러 놓으면 스위치주의 표시등이 깜박거림)

주요 점검사항

(1) 화재표시 동작시험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

| 단계별 절차 | |
|---|---|
| | ① 안전조치를 한다.<br>가. 주경종, 지구경종, 싸이렌, 방송버튼 등을 눌러서 정지<br>나. 연동설비를 정지위치로 설정→ 연동정지 (유도등, 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등)<br>다. 빠른 진행을 위해 오동작방지기를 비축적으로 전환 |
| | ②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br>③ 회로시험스위치를 1회로씩 선택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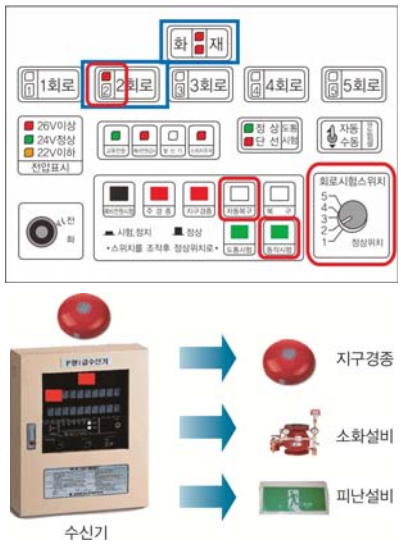 | ④ 동작확인을 한다.<br>가.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확인(적색)<br>나. 주경종, 지구경종, 싸이렌, 방송 등을 해제하여 확인(음향 확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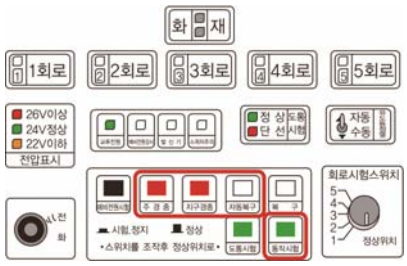 | ⑤ 수신기를 시험전으로 복구시킨다.<br>가. 동작시험스위치, 자동복구스위치를 다시 눌러 원상태로 복구<br>나. 주경종, 지구경종, 싸이렌, 방송 등을 다시 눌러 원상태로 복구<br>다. 회로시험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복구<br>라. 연동설비를 정상상태로(유도등, 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등) 전환한다. |

(2) 회로도통시험

회로별 감지기선로의 단선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단계별 절차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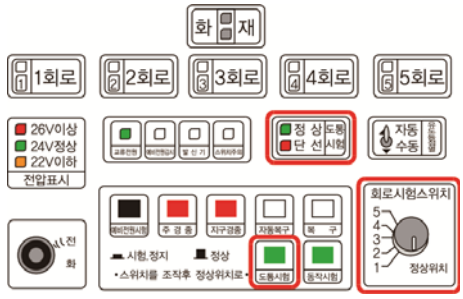 |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br><br>• 회로시험스위치를 1회로씩 선택한다. |
| <br>정상<br>(녹색등 점등)<br> <br>단선<br>(적색등 점등) | ③ 도통확인을 한다.<br><br>1) 도통시험 확인등이 있는 수신기 |
| <br>정상인 경우<br>(4~8V 지시)<br> <br>단선인 경우<br>(0V 지시) | 2)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 |

④ 수신기를 시험 전으로 복구시킨다.

1) 도통시험스위치를 다시 눌러 원상태로 복구

2) 회로선택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복구

www.nfa.go.kr

(3) 예비전원 시험

화재 등으로 정전 또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수신기가 정상 동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 단계별 절차 | |
|---|---|
| | ① 교류전원등(점등상태)과 예비전원감시등 (소등상태)을 확인<br>※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상태이면 예비전원 불량임 |
| | ②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른다.<br>(누르고 있는 동안만 시험 가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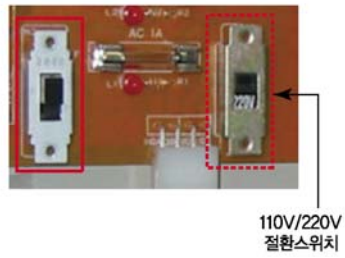 | ③ 예비전원 시험결과를 확인한다.<br>가. 자동전환여부 : 상용전원 입력을 차단한 후 작동상황 확인 |
| | 나. 예비전원 전압(24V)의 적정여부 |

## 5. 유도등 :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주요 점검사항

[예비전원 점검스위치]

[예비전원 점검버튼]

(1) 점등상태 확인

항시 점등되고 있는지 확인

(2) 예비전원 자동전환 확인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렀을 때 예비전원으로 점등 되는지 확인

(3) 외관 및 배선상태 확인

유도등 외관에 파손여부 확인 및 노출배선이 금속가공 전선관인지 확인

## 6. 휴대용 비상조명등

주요 점검사항

(1) 분실되거나 본체에서 탈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2) 본체에서 떼었을 시 자동으로 켜지는지 확인

※ 배터리 방전시 교체 : 상시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 7. 완강기

화재시 복도·계단등으로 피난 불가시 창문 등을 통해 바로 지상으로 탈출하는 피난기구

## 사용 방법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창 밖으로 줄을 놓는다. (로프 길이 적정한지 확인)

벨트를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고 조절링을 이용해 확실히 조인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다.

두손으로 로프2개를 잡고 발부터 창밖으로 내민다.

몸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을 가볍게 손으로 밀면서 내려온다.

## 주요점검 사항

(1) 완강기 주위에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2) 고정지지대가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3) 설치 층의 높이와 설치된 완강기 로프길이가 일치하는지 확인
(4) 설치장소에 완강기 사용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

### 완강기 사용시 주의사항

① 두 팔을 위로 들지 말 것
- 하강중 두 팔을 위로 올리면 몸이 벨트에서 빠져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② 사용 전 지지대를 흔들어 볼 것
- 사용전에 지지대를 흔들어 보아 흔들린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2장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화재시 피난하는데 사용하는 계단, 비상구 등과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화문, 방화벽 등으로서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등을 말한다.

**주요점검 사항**

### 1) 방화문

(1) 방화문 설치 장소에 다른 문으로 교체는 없었는가?
(2) 도어체크 기능은 정상인가?
(3) 고임장치 등으로 방화문 작동에 지장은 없는가?
(4)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가?

### 2) 방화셔터

(1) 방화셔터와 감지기의 연동은 정상적인가?
(2)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장애물은 없는가?

### 3) 복도 및 계단

(1)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 타용도로 겸용하여 사용하지는 않는가?
(3) 기타 피난이나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은 없는가?

### 4) 기 타

(1) 비상구 또는 비상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가?
(2) 기타 피난계단, 내부마감, 방화구획 등 건축법상 피난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지되고 있는가?

###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특정 소방대상물에 아래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물품 등을 지급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신고대상

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2.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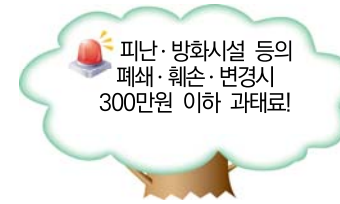


### 1)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1) 화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등 설치
(3)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
(4) 용접, 조적, 쇠창살,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을 막는 것
(5) 기타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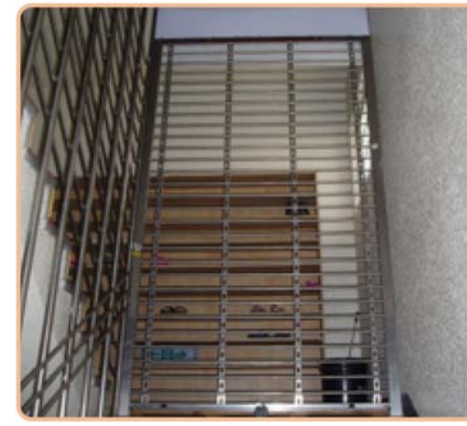

[장애물 적치 및 방범셔터 설치로 피난구 폐쇄]

2)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1) • 방화문을 철거·제거
•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
•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2) 배연설비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

(3)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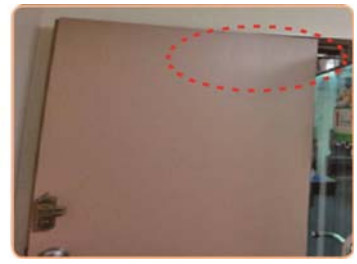

3)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1) 방화구획·내부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

(2)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3) 건축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방화문
철거 후
유리문 설치

4) 피난 · 방화시설 등의 장애유발 행위

(1) 계단·복도(통로)·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의 설치

(2) 고정식 잠금장치는 아니나 계단·복도에 철책(문)등 설치

(3)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장애물 설치

(4)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 초래

방화셔터 · 계단
장애물 설치

# 제3장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 1.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분기별 1회이상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표 미보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앱 다운로드 활용(소방시설점검 동영상 지원)

## 2.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 3. 점검자의 자격

| | |
|---|---|
| 점검자격 | •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br>•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br>• 소방시설관리업자 |
| 점검주기 |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1년에 4회)<br>※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면제 가능 |
| 점검방법 |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 |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 대상명 | | |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주용도 | | |
| 건물구조 | | 대표자 | | 소방안전관리자 | |

2.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
| ① 소화기 또는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br>-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br>-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br>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br>-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음향경보 확인<br>-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br>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br>-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확인<br>-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br>-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br>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및외관점검<br>-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점등상태 확인<br>-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br>-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br>-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br>⑤ 비상구 관리상태확인<br>⑥ 영업장 내부피난통로관리상태 확인<br>-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적치 등 관리상태<br>⑦ 창문(고시원)관리상태 확인<br>⑧ 영상음향차단장치작동기능점검<br>-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br>(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br>⑨ 누전차단기의 작동여부 확인<br>⑩ 피난안내도설치위치확인<br>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br>⑫ 실내작식물·내부구획재료교체여부확인<br>- 커튼,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br>- 합판·목재 장염성능확보 여부<br>-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여부<br>⑬ 방염소파·의자사용여부확인<br>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 여부<br>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 | |

www.nfa.go.kr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작성 예시)

1. 점검대상

| 대상명 | 00노래연습장 | | 전화번호 | 010-001-1119 | |
|---|---|---|---|---|---|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1로 119번길 |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대표자 | 김안전 | 소방안전 관리자 | 김소방 |

2.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
|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br>-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br>-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 <br>- 실마다 설치<br>- 소화기 입력상태 미달 | <br>- 소화기교체 |
|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br>-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br>-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 <br>- 펌프,경보 이상없음<br>- 이상없음 | |
|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br>-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확인<br>-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확인<br>-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 <br>- 이상없음 | |
|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br>- 유도등·유도표지등부착상태 및 점등상태확인<br>-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br>-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br>-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 <br>- 부착상태 양호<br>- 각실에 비치됨<br>- 점등상태 양호<br>- 피난기구 설치됨 | |
|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 - 비상구관리 양호 | |
|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br>-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적치 등 관리상태 | <br>- 물건적치 불량 | <br>- 적치물건 치움 |
| ⑦ 창문(고시원)관리상태 확인 | - 관리상태 양호 | |
|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br>-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 <br>- 비상벨작동시 영상음향 차단됨 | |
| ⑨ 누전차단기의 작동 여부 확인 | - 전기업체에서 점검 받음 | |
|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 - 각실부착함 | |
|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 - 손님 바뀔때마다 영상물 상영함 | |
| ⑫ 실내장식물·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br>-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br>- 합판·목재 장염성능확보 여부<br>-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여부 | <br>- 완공필증 발급시 확인 완료 | |
|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 여부 확인 | - 사용하고 있음 | |
|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 여부 | - 보관하고 있음 | |
|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 - 보험 계약기간 확인 완료 | |

PART 03

#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제1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제2장 만화로 보는 화재 예방

제3장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제1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 1. 공통 준수사항

- 영업의 개시와 동시에 비상구 개방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금지
- 안전시설등의 작동여부 확인 및 고장시설은 즉시 정비
- 이용객에 대하여 비상구 위치 등 내부구조 숙지토록 조치
- 종업원 등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및 화재시 대처요령 교육
- 문어발식 배선 사용금지 및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사용금지
- 전기시설 정기점검 철저(차단기 작동상태 및 누전여부 등)
- 영업장 또는 주변 인화성·가연물품 방치여부 등 확인
  -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불씨가 있는지 확인
  - 업소 내 구석진 곳과 계단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정리정돈 철저
- 이동식석유난로 사용금지
- 인테리어 변경 및 구조변경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시공
- 소파·의자 및 가구류는 가급적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

## 2. 업종별 준수사항

### 1)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 이용자들이 대부분 취객인점을 감안하여 피난동선 반드시 확보
- 화재시 다량의 연기발생으로 패닉현상 발생 대비 ⇨ 인명대피요령 숙지
- 음악 및 노래소리로 화재인지 늦음 ⇨ 인명대피방안 강구
- 룸별 영상모니터 초기화면에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소파, 의자는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

###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업소 내 불필요한 화기취급시설 사용자제
- 전기·가스시설 매월 정기점검 실시
- 주방 및 보일러실(가스시설 취급) 등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금속배관 사용
- 가스 사용시 호스가 낡거나 손상된 것은 즉시 새것으로 교체
- 영업종료 후 가스시설 밸브 잠금 상태 확인

### 3) 비디오감상실·비디오소극장

- 룸별 영상모니터 초기화면에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구획실(룸) 내 흡연 등 행위 금지
- 인화성물질 반입 금지
- 영업장 내 숙직행위 금지 및 불필요한 화기취급시설 사용 자제

### 4) 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장 내 숙식 및 취사행위 금지
- 누전차단기 주기적인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 영업장 내 흡연구역 수시확인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 사용 금지

### 5) 산후조리원

- 주방 및 보일러실 등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금속배관 사용
- 비상구 항시 개방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금지
- 신생아의 감염문제 등으로 피난계단 내 장애물 설치 금지
- 화재발생시 산모 및 신생아의 우선적인 대피방안 등 강구

### 6) 고시원·수면방

- 비상구 위치, 피난설비 등 피난안내도 객실별 부착
- 구획실(룸) 내 흡연 및 취사행위 등 화기취급 금지
- 각종 전기용품 사용으로 과부하 등 전기화재 발생요인 사전제거
- 전기담요 및 비닐전선 사용 금지
- 종업원(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 ⇨ 평상시(비상시) 조치사항
- 불법 증·개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금지
- 침구류는 가급적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

### 7) 전화방·화상대화방

- 구획실(룸) 내 흡연 등 행위 금지
- 룸별 영상모니터 초기화면에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영업장 내 숙직행위 금지 및 불필요한 화기 취급시설 사용 자제

8) 학원

- 강의실 별 피난안내도 비치
- 화재발생시 학원생의 분산대피 방안 강구
- 관계자 정기적인 대처요령 확인 및 훈련실시
- 피난경로가 협소하고 미로인 내부복도 등은 피난동선 반드시 확보

9) 목욕탕(찜질방)

-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방화문 폐쇄 또는 변경행위 금지
- 주방, 숯체험장, 황토방, 불가마 등 취약요인에 화재위험요소 사전제거
- 불법 증·개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금지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이용객 분산 대피유도방법 등 안전방안 강구

10) 영화상영관

- 각 상영관마다 피난동선 별개 확보 및 안전요원 배치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관람객 분산 대피유도방법 등 안전방안 강구
- 심야 상영시간대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 폐쇄 금지
- 심야 상영시간대 상영관별 안전요원 배치
- 비상엘리베이터 작동여부 수시 확인
-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초기대응방법 수시교육
- 영화상영전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인명구조용 기구(공기호흡기) 압력상태 수시확인 및 사용법 수시교육
- 관계자 정기적 안전교육 및 가상훈련 실시

11) 콜라텍·권총사격장·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각종 전기시설 과다사용으로 전기 과부하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
- 영업장 내 안전요원 배치하여 위험요인 사전제거
- 흡연구역 설정 및 영업종료시 재떨이와 휴지통은 반드시 비울 것
- 불필요한 화기취급시설 사용 금지
- 불법 증·개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금지

##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수칙

### 1) 평상시

- 종업원들에게 영업장의 구조와 건물현황 알려주기(비상구 위치 등)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초기 사용법 숙지
- 화재시 행동요령(119신고 및 전파, 피난유도 방법 등) 알아두기
- 건물의 위치와 화재신고방법 연습(주소, 업소명, 화재종류 등)

### 2) 영업시작 전 해야 할 일

- 영업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 비상구를 항시 개방(피난상 장애가 없는지 확인)
-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수시 점검(소화기, 수신기, 비상벨, 유도등)
- 불필요한 가연물과 위험물의 방치여부 확인

### 3) 영업 중에 해야 할 일

- 위험요소는 없는지 수시 확인
-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
- 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비상구 위치안내

### 4) 영업을 마치면

- 영업장에서 불필요한 숙식 금지

# 제2장 만화로 보는 화재 예방

## 1. 전기화재 예방요령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꼽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빼둔다.
- 과전류 차단장치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동작유무를 확인한다.

### 1) 콘센트 용량초과 방지

문어발 배선 등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해 전선이 맞붙어 아크와 함께 고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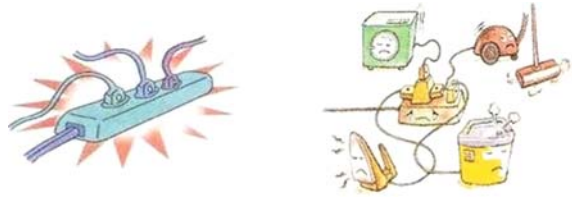

### 2) 규격전선 사용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비닐전선을 용량초과 사용시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규격전선을 사용한다.

**전기안전 3대 수칙만 지켜도 90% 전기화재 예방 가능**

① 불법시설의 금지 및 임의 시설공사시 안전시공
②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사용 금지(전열기 등 동시 사용제한)
③ 누전차단기 주기적인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 2. 가스화재 예방

▶ 사용전/환기
가스불은 켜기 전 가스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환기시킨다.

▶ 사용중/점화확인
가스를 켤 때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불이 붙지 않은 채 콕크를 계속 열어두면 가스가 새어 위험합니다.

▶ 사용후/밸브잠금
점화콕크와 중간밸브를 잠근다.
※ 장시간 영업장을 비울 때는 중간밸브나 계량기 밸브까지 잠가야 안전합니다.

▶ 평상시/누출점검
호스와 연소기 등 이음새에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수시로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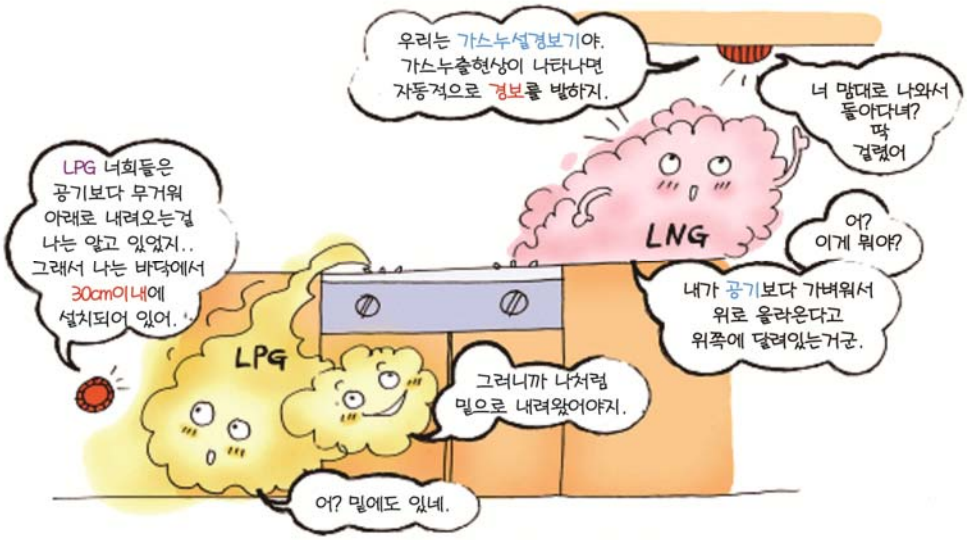

# 제3장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1.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순서

※ 화재신고를 할 때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변 주요건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 2.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 1) 피난유도

(1)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구조를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2) 안내원의 지시 또는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해야 한다.

2)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1) 문에 손을 대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뜨거울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2) 엘리베이터는 통로가 굴뚝역할을 하고 갇히어 질식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3)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시 대피자세]

3)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불길이나 연기로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보다는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PART 04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제1장 응급처치의 개요

제2장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 제1장 응급처치의 개요

## 1. 응급처치의 정의 및 목적

1) 응급처치 : 사고나 질병 또는 재해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 전에 실시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적절한 조치

2) 응급처지의 목적 :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 악화를 방지하여 고통 경감 및 차후 전문 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있다.

## 2.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1) 환자의 의식, 호흡 상태 파악

(1) 환자를 수평으로 눕혀 놓고 의식,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3) 의식 없이 호흡을 할 때나, 인공호흡으로 호흡이 돌아오면 토하거나 구강에 분비물이 많아지므로 얼굴을 옆으로 하여 비스듬한 자세를 취해주어 구토물이 잘 배출되도록 한다.

2) 환자의 출혈 상태 파악 및 지혈

환자의 출혈 정도를 살펴서 출혈량이 과도할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과다 출혈을 방지한다.

3) 환자의 손상 부위를 파악할 것

(1)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물어보아야 한다.

(2)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육안으로 관찰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는 충분히 노출시켜 상처의 범위를 확인한다.

4)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를 실시하더라도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것

(1) 응급처치 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사람이 응급처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 제2장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 1. 심폐소생술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되지 않으므로 호흡과 반응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보내주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Compression) → 기도유지(Airway) → 인공호흡(Breathing)의 C → A → B 순서이다.

### 1)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1) 심정지 확인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등의 말을 하여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빡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여 심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무반응, 비정상 호흡은 심정지로 판단)

(2) 주변의 도움요청 및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심장충격기를 함께 요청한다.

(3) 가슴압박 30회 시행

가슴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4)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6) 회복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며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만약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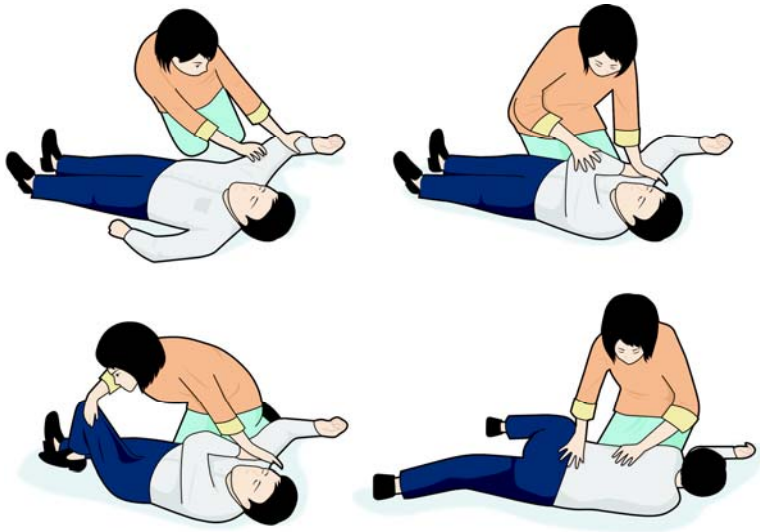

심장수호 7계명

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② 담배는 반드시 끊고 음주 횟수를 줄이자.(음주시 2~3잔 이내).
③ 짜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라.
④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즐기자.
⑤ 평소 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관리하자
⑥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전조증상이 의심되면 재빨리 병원을 찾자.
⑦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라.

2) 가슴압박법

(1) 가슴압박 위치는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1/2

(2) 손과 어깨는 일직선을 유지하고 환자의 가슴과 90°를 유지, 이때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한다.

(3) 압박깊이는 성인의 경우 5㎝가 적당하다.

(4) 가슴을 압박후에는 흉벽이 정상위치로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가슴뼈로 부터 손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분히 떼어준다.

(5)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 손꿈치 만 흉부에 닿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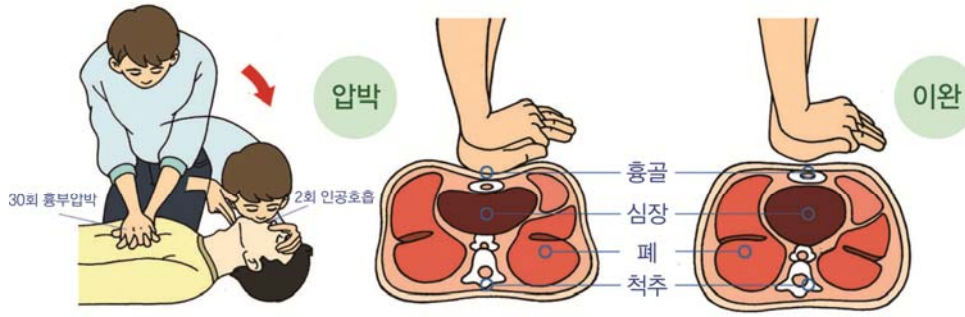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

압박의 길이는 5~6cm로 하고 속도는 100~120회/1분

[성인]

[소아]

[유아]

##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모습]

[자동심장충격기 예시]

1) 전원을 켠다.

2)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패드를 부착한다. 한쪽은 우측 쇄골의 바로 아래쪽에 부착하며, 다른 한 쪽은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한다. 각 패드의 표면에 부착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한다.

3) 패드를 부착하면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분석중에는 환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4) 기계의 분석이 끝난 이후 심장충격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충전이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 주변 사람 및 구조자가 기계와의 접촉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5) 심장충격이 필요 없거나 심장충격을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6) 기계는 자동으로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기계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및 기계의 표면에 사용법이 적혀 있으므로 사용시에 참고한다.

# 첨부 화재사례로 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

## 1. 부산「○○ 노래주점」화재사례 분석

사망 9명, 부상 5명, 연기흡입 13명, 재산피해 8,000만원

### 1) 화재 발생 개요

- 일　　시 : 2012년 5월 5일 20:52 ~ 22:02(70분 소요)
- 장　　소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상 3층
- 원　　인 : 룸 천장 위쪽에 설치된 전선에서 화재 발생
- 인명구조 : 27명(건물내부 10명, 옥상층 17명)

[노래주점 전경]

[화재 현장 사진 :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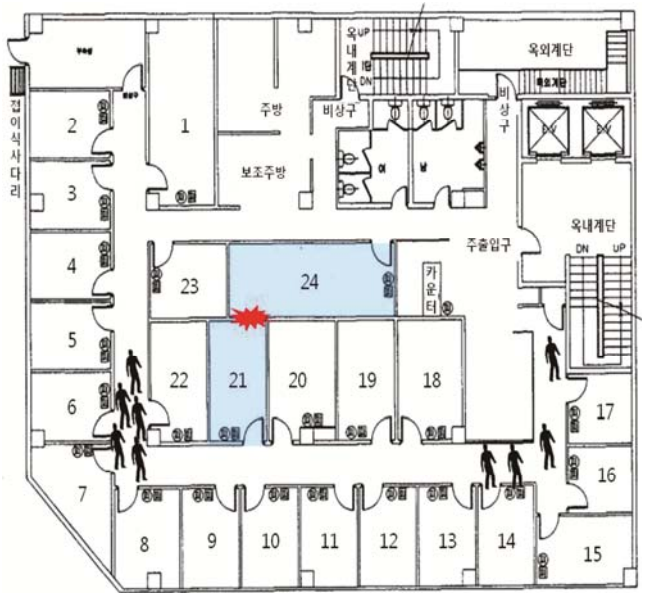


[사망자 발견위치]

2) 소방시설 현황

• 노래주점 : 비상구 3, 영상음향차단 1, 피난기구 1, 비상벨 29, 휴대비상조명등 29

3) 출동현황 : 소방 311명·경찰 150명 출동

4) 다수 인명피해발생 원인

✓ 초기진화 실패와 대피지연

① 화재가 빈룸에서 시작되어 초기에 알지 못함
② 화재발생 사실을 손님에게 즉시 전파하지 않음
③ 영업주와 종업원이 초기진화 실패

✓ 소방시설 미작동과 교육 미이수

① 경보설비(비상벨)와 영상음향차단장치 미 작동
② 종업원들이 소방교육을 받지 않아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지 못함

✓ 비상통로 차단

① 출입구 옆 룸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주 출입구와 가까운 비상구는 불꽃과 연기로 차단
② 주 출입구 맞은편 비상구 불법 개조로 피난구 역할 못함

[현장 외부사진]

5) 화재 사례를 통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사항

(1) 영업주와 종업원 안전의식 결여

① 화재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만 밖으로 대피

② 비상구를 불법 개조해 룸으로 사용

③ 옥내소화전 및 비상구 부근에 주류박스 등 장애물 설치

⇨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강화, 화재 시 손님 대피 의무 신설

(2) 룸 칸막이 등 설치기준 미비

① 각 룸 칸막이 구획 기준 미비

② 반자 속에 합판, 가연물 등 설치 시 별도의 제제 규정 미비

⇨ 영업장 내부 구획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정 속 구획 등 설치기준 신설

(3) 창이 없는 밀폐구조로 질식

⇨ 밀폐구조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4) 음주로 피난 통로를 찾지 못함

⇨ 영업장내 피난통로 기준 신설

⇨ 피난통로에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변경, 훼손시 과태료 부과 신설

##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

[○○호프집 화재(인천 중구) : 1999.10.30 / 사망 56명 / 부상 81명]
① 지하 노래방 불장난이 2층 호프집으로 확산
② 비상구가 없고 출입구 폐쇄

[○○유흥주점 화재(전북 군산) : 2002.1.29 / 사망 15명]
① 합판·스티로폼의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유독가스 확산
② 비상구 폐쇄

[○○월드찜질방 폭발사고(대구 수성) : 2005.9.2 / 사망 5명 / 부상 48명]
① 지하 보일러실에 유증기 누출
② 점화원에 의해 유증기 폭발

[○○고시원 화재(서울 송파) : 2006.7.19 / 사망 8명 / 부상 9명]
①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발생
② 고시원으로 유독가스 확산

[안산 ○○성인오락실 화재(안산 단원구) : 2007.12.26 / 사망 5명 / 부상 2명]
① 불법 영업을 감추기 위해 철문 설치
② 용접 불티로 화재 발생 및 확산

[용인 ○○고시텔(용인시 처인구) : 2008.7.25 / 사망 7명 / 부상 11명]
① 방화로 인한 화재 확산
② 비상벨 미작동 및 창문 폐쇄

[부산○○사격장 화재(부산 신창동) : 2009.11.14 / 사망 15명 / 부상 1명]
① 사격시 불꽃 발생
② 흡음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적 확산

[○○노래주점 화재(부산) : 2012.5.5./ 사망 9명]
① 천정안 전선에서 발화
②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화재 확대 및 미로구조

[○○휘트니스 스파(제천) : 2017.12.21./ 사망 29명/부상40]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미비, 외벽 드라이비트 연소확산
②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폐쇄로 작동불가, 비상구 장애물 설치 등



www.nfa.go.kr

## 꼭! 자주하는 질의응답-다중이용업소

Q1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안되는지?

A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점이 지상 1층에 위치한다고 해서 모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후단의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장만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2 모든 실내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

A2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를 하는 업종으로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어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7호의4

Q3 일반 사우나실을 갖춘 목욕장업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A3 영업장 안에 목욕탕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분이 수용인원 100인이상이 된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발한실이란 땀을 내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우나 시설도 이에 해당됩니다.

Q4 일반음식점이 지상1층과 지상2층의 각 피난층에 위치하며, 층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A4 지상1층과 지상2층이 피난층인 건물이나, 층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후단

Q5 독서실도 다중이용업소인지?

A5 수용인원 300명이상인 독서실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 학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꼭! 자주하는 질의응답-화재배상책임보험

Q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이란?

A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10일이하 10만원, 30일이하 30만원, 최대 300만원)

Q2 보험가입 시 일련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A2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별로 소방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련번호는 다중이용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A3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주라고 하면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입니다.

Q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는지?

A4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운영여부, 가입 한도 등은 각 보험회사 보험운영 정책별로 다를 수 있음

Q5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5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배상책임보험 약관 "의무보험과의 관계"

## 꼭! 자주하는 질의응답-비상구

Q1 다중이용업소내 비상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A1 영업장내에서 화재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주출입구 반대편에 영업장 긴변 길이의 1/2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해야 하며,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반대편이 아닌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Q2 부속실형 및 발코니형 비상구의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A2 비상구의 추락방지를 위해 120c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거나, 탈착이 가능한 안전로프를 2줄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추락위험을 알려는 표지를 문마다 부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철제로 만든 발코니의 경우 부식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Q3 PC방 출입문을 게임산업법에서는 유리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방화문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지?

A3 건축법령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곳에는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는 불연재료(유리) 문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2호가목5)

Q4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A4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고, 정전시 자동·수동으로 개방되는 등 모든 조건이 충족할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Q5 자동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자동문 상층부에만 감지기를 설치가 가능한지?

A5 화재시 연기확산이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므로 어느 공간에서도 화재가 감지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 꼭! 자주하는 질의응답-실내장식물

Q1 유흥주점 영업장내 바닥에 깔린 직물카펫이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지?

A1 바닥장식재는 다중이용업소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닥에 설치하는 카펫은 방염대상물품으로 필히 방염된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소방시설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Q2 다중이용업소법상 실내장식물 중 합판,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산정시 "벽"이란 어떠한 벽을 의미하는지? 불연석고보드로 제작한 벽체도 면적산정시 포함 되는지?

A2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산정시 벽이라 함은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재질을 불연재료로 구획하였다 하더라도, 내화구조의 벽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3 부스형 코인 노래연습장도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지?

A3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로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시 화염 및 연기확산이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Q4 단란주점 영업장 상부에 반자가 없는 구조로 천장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A4 노출로 시공된 스티로폼 단열재는 다중이용업소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티로폼 단열재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Q5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시 배관 등 관통부분의 마감방법은?

A5 내부구획시 관통된 부분에 틈이 있는 경우에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받은 재료(내화용실리콘, 내화용폼)를 사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꼭! 자주하는 질의응답-안전시설등 설치

Q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 복층시설물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하부층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A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7항에 따라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복층시설물 하부층에도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Q2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는 언제부터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A2 K급 소화기는 '17.6.12.이후 신설되는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영업장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지도하고 있습니다.

* 설치대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

Q3 화장실도 구획된 실에 해당되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A3 화장실은 오락을 위한 공간개념의 실이 아니므로 구획된 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5항에 따라 화재감지기는 설치해야 합니다.

Q4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비상벨설비가 발신기세트를 의미 하는지?

A4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비상벨설비는 발신기세트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획된 실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경종(지구음향장치)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1호나목

Q5 VR테마파크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VR방, PC방, 휴게음식점 등) 설립 시 VR방, PC방, 음식점 등 업종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A5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VR방, PC방, 휴게음식점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하나의 영업장으로 이 법에 따른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를 1개소만 설치해도 가능하나, 수용인원 및 영업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의 수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꼭! 자주하는 질의응답-안전시설등 설치

Q1 '18.7.10. 개정된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 적용시점은?

A1 '18.7.10.시행일 기준으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최초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영업장부터 적용하고, 피난유도선은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및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한 영업장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다중이용이용업소법 시행령 부칙(제29037호,2018.7.10)제2조,제3조

Q2 구획된 실로 인한 통로가 없는 영업장(PC방 등)이 간이칸막이 등으로 통로가 형성된 경우 피난통로와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은?

A2 고정된 간이칸막이 등으로 인해 통로가 형성된다면 120cm이상의 통로폭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높이 1.5m이상 간이칸막이 등으로 인한 통로가 있는 경우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원점등 또는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중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Q3 건축법 제2조제7호의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로 인해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A3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 훼손은 건축물 안전 및 붕괴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난통로에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통로폭 기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내부통로가 없는 찜질방 및 음식점 등에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

A4 본래 다중이용업소에는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하나, 내부통로가 없어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에는 축광방식 피난유도선(KFI제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5 프렌차이즈 업소와 같은 다수의 직영점이 있는 경우 법인대표와 점장(종업원) 중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A5 체인점, 직영점과 같은 영업장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점장(매니저)이 교육을 받으면 영업주의 자격으로 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장 외 종업원 1인 이상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